

▶ 전북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2020.10.5.개정)

제 3 장 교양교과목 운영

제15조의1(이수기준의 예외)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청각장애 학생은 기초교양 영역의 실용영어 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다만, 이수 면제에 따른 부족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 교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영어능력 인정) ①재학생이 최근 2년 이내에 영어능력인정시험에 일정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및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초교양영역의 실용영어 이수를 면제한다. 다만, 이수면제에 따른 부족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 교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②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의 인정범위 및 성적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교과목명은 “실용영어”로 하고, 성적표에 Pass로 표기한다.

④공인 영어능력시험 성적이 실용영어 과목 이수 면제에 해당하는 학생은 성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과)장은 학장을 경유하여 혁신교육개발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증명서는 성적표의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등 외부 인증 운영 학부(과)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12조(제출절차) ①공인 영어시험 성적이 제11조의 기준을 충족한 자는 성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수강신청 변경기간 개시 전까지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과)장은 학장을 경유하여 혁신교육개발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변)조 성적증명서 제출시 학칙 제96조, 97조 및 전북대학교 학생상벌규정 등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③인터넷 성적증명서 출력물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화면을 스캔하여 제출한 성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유효기간) 성적증명서는 성적표의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응시일이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한다.

제14조(적용제외) 공학인증프로그램 등 외부 인증 운영 학부(과)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북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시행세칙(2020.10.5.개정)

제 3 장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 인정범위 및 성적기준

제9조(적용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에 한하며 공인 영어시험 성적이 제19조의 기준을 충족한 자는 기초교양 영역의 실용영어 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다만, 이수 면제에 따른 부족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 교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표기방법) 공인 영어능력 인정시험으로 실용영어 과목을 이수 면제받은 재학생은 교과목명을 “실용영어”로 하고, 성적표에 Pass으로 표기한다.

제11조(인정범위 및 성적기준) 공인 영어능력 인정시험의 인정범위 및 성적기준은 아래와 같다.

TOEIC	TOEFL		TEPS	New TEPS	IELTS	G-Telp (LEVEL2)
	CBT	IBT				
800이상	233이상	91이상	637이상	348이상	6.5이상	76이상